

의안번호	제 502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352 회)

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1월 11일

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50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1월 1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2017년 기금운용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2016년도말 조성액	2017년도 운용계획			2017년도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증감	
634,689	298,614	203,949	94,665	729,354

- 2017년 기금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16년말 조성액	2017년말 조성액	증감
계 (14개)	634,689	729,354	94,665
청소년육성기금	1,178	1,179	1
양성평등기금	6,403	6,403	-
통합관리기금	87,519	82,796	△4,723
지역개발기금	379,532	501,966	122,434
자활기금	2,013	1,954	△59
사회복지기금	25,615	25,497	△118
식품진흥기금	11,298	11,164	△134
남북교류협력기금	2,087	2,105	18
체육진흥기금	2,655	2,678	23
투자진흥기금	1,991	2,027	36
중소기업육성기금	49,528	23,392	△26,136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319	6,332	13
재난관리기금	27,217	28,449	1,232
환경보전기금	31,334	33,412	2,078

3. 의안전문 : 첨부(2017년 기금운용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**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7.24]

[전문개정 2011.5.30.]